

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

의안 번호	26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4. 7. 19.

발 의 자 : 조승남의원외 3인

1. 제안이유

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규정 (별표)

나.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규정을 적용토록 하며, 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, 그 지시에 따라 처리토록 함.
(안 제3조)

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안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속초시의회 소관사무에 관한 의장의 결재 사항 및 위임 전결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신속과 능률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 사무의 위임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전결방법) ①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.

②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.

③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전결권자의 책임) 이 규정에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5 조 (준용규정) 예산운영에 대하여 이규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 무 위 임 전 결 구 분 표

단 위 사 무	세 부 업 무	전 결 권 자	
		계 장	사무과장 의 장
1.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사항	①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·변경		○
	②회의규칙 및 규정의 제정·개정		○
2. 의사에 관한 사항	①의회소집요구서 접수		○
	②본회의장 의석 배정		○
	③회의일정 작성		○
	④회의록 원고복사 및 열람 (비공개 회의록 제외)	○	
	⑤비공개회의록 열람		○
	⑥회의록게재 신청 허가		○
	⑦자구정정 허가	○	
	⑧녹음, 복사 허가		○
	⑨회의록 불게재		○
3. 의안에 관한 사항	①철회결정된 의안의 통지	○	
	②의안처리결과의 통지	○	
4. 청원에 관한 사항	①청원서의 보완요구 및 반려	○	
	②불수리의 통지	○	
	③심사기간 연장		○
	④청원서의 이송		○
	⑤처리결과의 통지	○	
5. 의원에 관한 사항	①의원청가의 허가 통지	○	
	②결정된 의원사직의 허가 통지	○	
	③신분증 신규 및 재발급	○	

단 위 사 무	세 부 업 무	전 결 권 자		의 장
		계 장	사무과장	
6. 회의장질서에 관한 사항	①방청권의 발행기준 수립			○
	②방청권의 발행 교부		○	
	③녹음, 녹화, 촬영 및 중계방송허가			○
	④참관 허가		○	
7. 예산운영	①의회예산(안) 편성 및 제출			○
	②예산배정 및 전용요구		○	
	③예산품의 · 예정금액 2,000만원 초과외의 공사나 1,000만원 초과외의 제조및 용역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만원 초과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			○
	· 예정금액 2,000만원 이하외의 공사나 1,000만원 이하외의 제조및 용역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만원 이하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		○	
	④전도자금관리		○	
8. 서무 기타	①접수문서의 선결		○	
	②공인관수		○	
	③직원 사무분장		○	
	④문서관리		○	
	⑤비밀취급인가 신청		○	
	⑥보안에 관한 사항		○	
	⑦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청		○	
	⑧차량관리		○	
	⑨직원의 복무 · 사무과장등 (5급이상) · 6급이하		○	○